

논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75호
------	------

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미래전략실장
제출연월일	2023. 5. 16.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75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5. 16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미래전략실장

1. 제안이유

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절기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시설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조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감사실-4097(2023.04.20.)호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복지정책과-11829(2023.04.10.)호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 [예산실-4300(2023.04.07.)호]
- 4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3. 4. 7. ~ 2023. 4. 27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제출의견 없음
- 5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관광진흥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설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3월 ~ 5월, 9월 ~ 10월 : 09시부터 18시까지
2. 6월 ~ 8월 : 09시부터 20시까지
3. 11월 ~ 2월 : 09시부터 17시까지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내용은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고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미래전략실장	박 찬 택
	탐정호운영팀장	박 재 옥
	담 당 자	김 주 영 (746-6478)

조정내용은 시 홈페이지 및 계
시판 등에 고지한다.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○ 해당 없음

나. 추계결과

○ 해당 없음

3. 작성자

미래전략실장 박찬택

참고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